강릉시의회 공고 제 2020 - 3호

「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개정함에 있어 「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0년 4월 13일

강릉시의회의장

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❍ 강릉사랑상품권 유통활성화 및 상품권의 발행액을 시장의 기능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상품권 할인 구매 범위를 보완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❍ 상품권의 할인 구매 범위를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각종 장려수당, 포상금, 시상금 등 복지수당 성격의 정책수당에 대한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않음

-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4조 수정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0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국 산업전문위원)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:

- 주소: (25522)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(홍제동) 강릉시의회
- 전화: 033-640-4034
- 팩스: 033-640-4070

4. 참고사항

-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강릉시 조례 제 호

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판매 등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,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상품권 활성화 지원) ①·②(생 략)	제14조(상품권 활성화 지원) ①·②(현행과 같음)
③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. 다만, 상품권의 할인 구매는 개인의 경우 연 400만원 이하의 범위내로 하며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.	③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판매 등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,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④ ~ ⑥(생 략)	④ ~ ⑥(현행과 같음)